

도로명주소 부여·폐지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·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, 제25조,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. 1. 3.

영 광 군 수



○ 도로명주소(부여·폐지) 내용

종전(지번)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 (효력발생일)	도로명주소 부여·폐지 사유
별	지	기	재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(☎061-350-5777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건물번호 부여 내역

종전(지번)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 시 일	도로명주소 부여 사유
전남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1017	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1로 60	22. 1. 3.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528-1	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2길 27-18	22. 1. 3.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백수읍 죽사리 398	전남 영광군 백수읍 백수로12길 15-11	22. 1. 3.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백수읍 장산리 24-1	전남 영광군 백수읍 장궁길 138	22. 1. 3.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백수읍 상사리 1544-2	전남 영광군 백수읍 엄백로 188-50	22. 1. 3.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40-1	전남 영광군 묘량면 황량로1길 8-27	22. 1. 3.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608	전남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 436-75	22. 1. 3.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40-1	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1로 155	22. 1. 3.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1016-1	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77	22. 1. 3.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군남면 동월리 530-1	전남 영광군 군남면 봉덕로9길 68	22. 1. 3.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733	전남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10길 30-3	22. 1. 3.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백수읍 죽사리 367	전남 영광군 백수읍 백수로12길 41-8	22. 1. 3.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271-1	전남 영광군 영광읍 월현로 132	22. 1. 3.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944-8	전남 영광군 영광읍 함영로9길 54-6	22. 1. 3.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519-15	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신길 11	22. 1. 3.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영광읍 덕호리 349-2	전남 영광군 영광읍 덕호로3길 109	22. 1. 3.	건물신축

종전(지번)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 시 일	도로명주소 부여 사유
전남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 56-3	전남 영광군 군서면 성지로 514	22. 1. 3.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108-3	전남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3길 2-38	22. 1. 3.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영광읍 입석리 544-1	전남 영광군 영광읍 입석길1길 134-1	22. 1. 3.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360	전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길1길 52-1	22. 1. 3.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묘량면 월암리 24	전남 영광군 묘량면 황량로 495-15	22. 1. 3.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군남면 남창리 993-6	전남 영광군 군남면 상남로 278-56	22. 1. 3.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묘량면 월암리 22-1	전남 영광군 묘량면 황량로 495-50	22. 1. 3.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365-7	전남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3길 2-8	22. 1. 3.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365	전남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3길 2-10	22. 1. 3.	건물신축
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1-76	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길 19-2	22. 1. 3.	건물신축

건물번호 폐지 내역

종전(지번)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폐지 사유
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1-76	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길 19-2	22. 1. 3.	건물멸실

영광군계획시설(소로2-102호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일원의 ‘녹사 주공아파트 옆 군계획도로 개설공사’에 따른 군계획시설(소로2-102호)사업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.

2022. 1. 6.

영 광 군 수

1. 실시계획 인가 신청의 요지

가. 사업위치 : 전남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33-21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○종류 : 교통시설(소로2-102호선)

○명칭 : 녹사 주공아파트 옆 군계획도로(소로2-102호) 개설공사

다. (변경)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○(당초)960㎡ → (변경)1,035㎡

라. 사업의 목적 : 녹사 주공아파트 옆 군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주변 도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함.

마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

○주소 :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

○성명 : 영광군수(도시개발팀)

바. (변경)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○(당초)2020. 6. 30. ~ 2023. 6. 30.

○(변경)2020. 6. 30. ~ 2023. 12. 30.

2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재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 : 붙임 참조

3. 관련 설계도서 및 도면 : 게재생략(영광군청 도시환경과에 비치)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도시환경과(☎061-350-580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

연번	소재지		지번	지목	지적 (㎡)	편입 예정 (㎡)	토지소유자		관계인		비고
	읍면	리				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	
1	영광	녹사	33-22	임	64	64	전남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440-12 105-706	강○선			
2	영광	녹사	36-7	답	132	132	전남 영광군 군남면 군불로36-3	조○수			
3	영광	녹사	37-18	답	66	66	전남 영광군 군남면 군불로36-3	조○수			
4	영광	녹사	37-19	답	13	13	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	영광군			
5	영광	녹사	37-21	답	23	23	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	영광군			
6	영광	녹사	65-35	답	647	647	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	영광군			
7	영광	녹사	65-24	답	6	6	전남 영광군 군서면 서금길2길 142-17	김○문			
8	영광	녹사	65-30	답	15	15	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	영광군			
9	영광	녹사	37-20	답	4	4	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	영광군			
10	영광	녹사	65-22	답	65	65	국유지	기획재정부			
총 계					1,035	1,035					

「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2년 1월 6일

영 광 군



1. 조 례 명 :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2021년 영광군-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10년이상 재직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일수 조정 및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영광군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가. 재직기간 산정 조항 수정(기존 근거조항 삭제)

- (현행)제23조제11항 “(생략) 다만,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(생략)”
- (변경)제23조제11항 “(생략) 다만,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(생략)”

나. 장기재직 휴가일수 조정

구분	현행		개정		증·감(일수)
	일수	분할횟수	일수	분할횟수	
10년이상 20년미만	5	2	10	2	+5
20년이상 30년미만	10	2	15	3	+5
30년이상	10	2	20	4	+10

다. 장기재직 휴가일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

-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의 경우 개정이후 추가로 허용

라.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

- 선거사무 및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추가

4. 일부개정조례(안)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의견제출

-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(참조 : 총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(전화 : 061-350-523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2. 1. 6.~2022. 1. 26.(20일간)

나. 의견 제출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- 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

우) 57036 /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총무과
전화) 061-350-5236/ FAX) 061-350-5592

라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

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18조제2항”을 “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1항 제1호, 제2호,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: 10일(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)
2.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: 15일(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)
3. 재직기간 30년 이상 : 20일(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)

제23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⑮ 군수는 투표사무원,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(사전 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)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의 경우 제23조제11항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추가로 허가하여 적용한다.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3조(특별휴가) ① ~ ⑩ (생략)</p> <p>⑪ 소속기관의 장은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, 각 호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. , <단서 신설 2019. 4. 26.></p> <p>1.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: <u>5일</u>(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)</p> <p>2.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: <u>10일</u>(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)</p> <p>3. 재직기간 30년 이상 : <u>10일</u> (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)</p> <p>⑫ ~ ⑭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23조(특별휴가) ① ~ ⑩ (현행과 같음)</p> <p>⑪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<u>10일</u>-----</p> <p>2. ----- <u>15일(3회)</u>----- --</p> <p>3. ----- <u>20일(4회)</u>-----</p> <p>⑫ ~ ⑭ (현행과 같음)</p> <p>⑮ <u>군수는 투표사무원,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(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)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</u></p>